

강남서예문인화대전

심사 및 운영 규정

제정 2022. 10. 27

개정 2025. 11. 1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남문화원이 시행하는 서예문인화대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서예계의 전승 발전과 서예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 및 기능) 본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서예·문인화 전문가, 관련 분야 교수, 문화예술인,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공모요강, 신청자격 등 사업 기본계획, 심사기준, 채점표 확정, 수상자 및 시상 규모 결정,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3조(심사부문 및 심사기준) 본 대회는 한글서예, 한문서예, 문인화, 캘리그래피 4개 부문으로 한다.

- ① 창의성 30% : 작품의 독창성 및 새로운 표현력
 - ② 기술성(숙련도) 30% : 필력, 기법, 구성, 표현의 정확성
 - ③ 예술성 30% : 주제의 심미성, 조형미, 완성도
 - ④ 전통성 10% : 서예·문인화 전통의 계승 여부
-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출품자격) 성인(외국인)이면 출품할 수 있다. 서예문인화 4단체 초대작가는 출품할 수 없으며, 다만 동 4단체에 단순히 출품한 일이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있다.

제5조(출품신청) 본 대회 출품료는 5만원으로 한다. (출품수 제한 없음, 추가분은 점당 2만원)

제6조(심사위원 및 심사방법)

- ①심사위원은 서예 각 단체별 초대작가 및 이사급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.
- ②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심사는 합의제 방식에 의하되, 합의가 안 될 경우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투표로 결정한다.
- ④심사장은 작품심사 관계관 외 출입을 제한한다.
(관계관 : 운영위원장, 심사위원, 진행자)

제7조(시상)

- ①대상(1점) : 공모작 중 최고작품 시상
- ②우수상(3점) : 대상작품 분야를 제외한 부문별로 최고작품 시상
- ③삼체상 : 3작품 이상 출품자 중 상위 00명 선정
- ④특선 : 입상작 중 상위 33% 선정
- ⑤입선 : 출품작품 중 60% 선정

제8조(특전)

- ①강남서예문인화대전에서 입상 순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누계 15점 이상인 자를 초대작가로 대우한다.
- ②초대작가를 위한 점수 계산은 최상위 수상작 한 점에 한정해서 산정한다.
(대상 7점, 우수상 5점, 삼체상 5점, 특선 3점, 입선 1점)

제9조(심사의 공정성 확보)

- ①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.
- ②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금품, 향응, 청탁을 받을 수 없다.
- ③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비 및 위원 수당)

- ①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
②심사위원의 사례비는 문화원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이의신청)

- ①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이의신청은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
- ③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한다.

제12조(기타사항)

- ①본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②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